

동정광 구매계약서 (요약본)

항목	내용
계약번호	LT-CAM-2025
매도인 (Seller)	Cerro Azul Mining S.A. (칠레)
매수인 (Buyer)	온산메탈 주식회사 (Onsan Metals Co., Ltd.)
대상	Los Andes 광산 동정광 (Copper Concentrate)
계약기간	2025-01-01 ~ 2029-12-31 (5년)
연간 물량	420,000 DMT $\pm$ 10% (매도인 선택), 월 약 35,000 DMT 균등 선적
인도조건	CIF FO 온산항, 대한민국 (Incoterms 2020)
통화	USD
관리 부서	원료부문 원료구매팀
본 요약본	정산 검증용 발체. 원문(영문 42면)과 다를 경우 원문 우선

§1. 품질 (Quality)

- 대표 품위: Cu 27%, Au 4 g/t, Ag 60 g/t (보증치 아님, 참고치)
- 불순물: As 2,500 ppm 이하를 목표로 하되, 2,000 ppm 초과분은 \$5 페널티 적용
- 수분: 9.0% 이하. 운송 허용 수분(TML) 준수는 매도인 책임

§2. 지급 금속 (Payable Metals)

금속	지급률	최소 공제	비고
구리 (Cu)	최종 품위의 96.5%	1.0 unit (%)	둘 중 매수인에게 유리한(낮은) 쪽 적용
금 (Au)	96.5%	1.0 g/t	최종 품위 1.0 g/t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음
은 (Ag)	90.0%	30.0 g/t	최종 품위 30 g/t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음

지급 금속량 = 최종 건중량(DMT) × 지급 품위. 금·은은 g → troy oz 환산(1 oz = 31.1034768 g).

§3. 가격 기준과 QP (Quotational Period)

- Cu: LME Grade A Copper **Cash Settlement** 가격의 QP 기간 산술평균 (USD/t)
- Au: LBMA Gold PM 가격의 QP 기간 산술평균 (USD/oz)
- Ag: LBMA Silver 가격의 QP 기간 산술평균 (USD/oz)
- **QP = 선박이 양하항(온산)에 도착한 달의 익월(M+1) 1일부터 말일까지.** 도착일은 NOR(하역준비완료통지) 제출일로 한다.
- 매도인은 QP를 M+3로 변경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. 단, **B/L 일자 30일 전까지 매수인에게 서면(이메일 포함)으로 통지**해야 하며, 통지가 없으면 M+1을 적용한다. 구두 통지는 효력이 없다.

§4. 제련·정련 수수료 (TC/RC)

연도	TC (USD/DMT)	RC (US\$/lb, 지급 Cu 기준)
2025	21.25	2.125
2026 (Annex 2026-01)	18.00	1.80

- TC는 최종 건중량에, RC는 지급 구리량(lb 환산, 1 t = 2,204.62262 lb)에 적용한다.
- Price participation 없음. 벤치마크나 스팟 시세와 무관하게 위 표의 값만 적용한다.

§5. 페널티 (Penalties)

원소	기준	페널티
As	2,000 ppm 초과	초과 1,000 ppm당 USD 3.00/DMT, 비례 적용 (fractions pro rata)
Pb	1.0% 초과	초과 1%당 USD 1.50/DMT, 비례 적용

페널티는 §7에 따라 **확정된 최종 품위**를 기준으로 계산한다.

§6. 검량·시료 채취·수분 (Weighing, Sampling, Moisture)

- 양하항(온산)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독립 검정기관이 검량(draft survey)·시료 채취·수분 측정을 한다. 매도인 또는 그 대리인은 입회할 수 있다.
- 양하항에서 **확정된 습중량·수분·건중량이 최종이며 양 당사자를 구속한다.** 선적항 수치는 가정산 용도로만 쓴다.
- 시료는 매수인용·매도인용·umpire용·예비용 각 2세트로 봉인한다.

§7. 검질 (Assays)

- 양 당사자는 각자의 시료를 분석하고, 시료 채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**동시 교환**한다.

- Splitting limit (교환 결과 차이의 허용 한도):

원소	Splitting limit
Cu	0.20 %
Au	0.20 g/t
Ag	3.0 g/t
As	200 ppm
Pb	0.10 %

- 차이가 한도 **이내(이하)**이면 두 값의 산술평균을 최종 품위로 한다.
- 차이가 한도를 **초과**하면 합의된 umpire 기관(1순위 Alfred H Knight, 2순위 SGS)에 umpire 분석을 의뢰한다. umpire 결과가 양측 값 사이에 있으면 umpire 값과 그에 가까운 쪽 값의 평균을, 양측 값 중 하나와 같거나 바깥에 있으면 가까운 쪽 값을 최종으로 한다. umpire 비용은 결과에서 더 먼 쪽이 부담한다.
- umpire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해당 원소의 최종 품위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.

§8. 대금 지급 (Payment)

- **가정산 (Provisional payment):** 매도인의 Provisional Invoice 금액의 90%. Provisional Invoice는 B/L 습중량, 선적항 수분, 매도인 가검질, B/L 일자 직전 5영업일의 가격 평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. 선적서류 제시 후 5영업일 이내 지급.
- **최종 정산 (Final settlement):** 최종 건중량·최종 품위·QP 평균가격으로 산출한 금액에서 가정산 지급액을 뺀 잔액. **Final Invoice**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뒤 5영업일 이내에 지급(또는 환급)한다.
-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 항목은 인보이스에 포함할 수 없다.

§9. 체선료·조출료 (Demurrage / Despatch)

- Annex 3 정박기간 조건에 따라 Laytime Statement를 근거로 **정산 인보이스와 별도로** 정산한다. Final Invoice에 합산하지 않는다.

§10. 비밀유지

- 본 계약의 TC/RC, 지급률, 페널티 조건은 대외비이다. 내부 회람 문서에는 “대외비 — 내부 회람용”을 표기한다.